

2020년도 제9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

I. 회의 개요

- 일 자: 2020. 5. 29.(금요일)
- 방 법: 온라인심의
- 참 석 자: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
 - 심의위원: 김경숙 위원(분과위원장), 박정인 위원, 최승수 위원, 최현용 위원
-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

〈의결안건〉 ※ 안건 검토: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

-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,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

II. 회의내용 및 결과

-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,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
 - 주요내용: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·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69건(안건번호 제2020-34859호~34918호)
 - 회의결과: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·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고,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

Ⅲ. 주요내용

- A 위원: 본 사건은 웹하드 사이트(○○○○○○○, ♣♣♣♣ 등)에 불법복제물(방송)들을 불법 공중송신한 사건으로 당해 복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해당 이용자들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의견임.

- B 위원: 상기 안전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아닌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시정권고를 가결함. 다만 이미 삭제되었거나 전송이 중지된 경우에는 경고의 시정권고를 해야할 것임.

- C 위원: 안전번호 제2020-34859호~34918호는 불법 복제한 영상저작물(방송)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. 다만,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.

- D 위원: 본 심의대상 제2020-34859호~34918호(순번 1번~60번)는 웹하드, 모바일 웹하드에서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는 일본 TV만화 애니메이션, TV 예능프로그램, TV 드라마들로서 69건의 국내외 최신 방송영상물들임. 이들은 상업목적의 온라인 서비스를 통하여 복제 전송을 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들이 영리목적의 온라인 서비스에 게시함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보여짐. 그 결과 저작권자가 얻어야 할 경제적 수익을 박탈함으로써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음. 이에 저작권법 제133조의3의 삭제의 시정권고가 타당하며 다만, 이미 삭제된 게시물에 대해서

는 경고의 시정권고만이 타당함.

2020년 제91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록이
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20. 5. 29.

분과위원장 김경숙

위원 박정인

위원 최승수

위원 최현용